

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분장규칙 개정(안)

제	정	2008. 05. 20
개	정	2011. 08. 10
개	정	2012. 01. 25
개	정	2012. 05. 30
개	정	2012. 12. 05
개	정	2014. 03. 20
개	정	2015. 01. 19
개	정	2015. 05. 18
개	정	2017. 02. 08
개	정	2017. 05. 16
개	정	2018. 10. 17
개	정	2020. 01. 23
개	정	2020. 02. 28
개	정	2020. 05. 04
개	정	2021. 08. 03
개	정	<u>2022. 06. 03</u>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」 제4조와 「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규정」 제3조, 「아주대학교 업무분장규칙」 제33조에 따라 각 부서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01.25.>

제2조(적용)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 장 업 무 분 장

제3조(산학기획팀) 산학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11.08.10., 2012.01.25., 2012.05.30., 2012.12.05., 2014.03.20., 2017.02.08., 2017.05.16., 2018.10.17., 2020.01.23., 2020.05.04>

1. 산학협력단 장·단기 발전계획 수립
2. <삭제 2012.01.25.>
3. <삭제 2012.01.25.>
4. <삭제 2012.01.25.>
5. <삭제 2012.01.25.>
6. 산학협력단 정관 및 규정류의 제·개정

7.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운영
8. 산학협력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인사관리 업무
9. <삭제 2011.08.10.>
10. <삭제 2011.08.10.>
11. <삭제 2011.08.10.>
12. <삭제 2011.08.10.>
13. <삭제 2011.08.10.>
14. <삭제 2011.08.10.>
15. 산학협력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
16. 대형국책과제 수주 등을 위한 기획·지원업무 및 대외활동
17. 외부기관 MOU 체결 등 대외협력 추진업무
18. <삭제 2018.10.17.>
19. 교외 연구비관련 평가업무
20. 산학협력단 지표 및 통계관리
21. <삭제 2018.10.17.>
22. <삭제 2012.05.30.>
23. <삭제 2012.05.30.>
24. <삭제 2012.05.30.>
25. <삭제 2012.05.30.>
26. <삭제 2012.05.30.>
27. <삭제 2012.05.30.>
28. <삭제 2012.05.30.>
29. <삭제 2012.05.30.>
30. 학교기업 설립·운영 기획
31. <삭제 2018.10.17.>
32. <삭제 2018.10.17.>
33. 대학산학협력추진위원회 및 산학협력자체평가위원회 등 운영 <신설 2018.10.17.>
34.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35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36. 산학협력단장 직인 보관·관리 <신설 2020.01.23.>
37. 외부연구관련 지표 및 통계관리 <신설 2022.06.03>
38. 연구개발 능률성과급에 대한 관리 <신설 2022.06.03>
39. 산학협력단 예산 편성 <신설 2022.06.03>

제3조의 2(창의산학교육원) 창의산학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<신설

2011.08.10.> <개정 · 신설 2014.03.20.> <개정 2017.05.16., 2020.02.28>

1. 산학협력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 · 지원
2.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수주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
3. 산학협력 친화 학사제도 기획 및 산학협력교육 성과관리 <신설 2020.02.28>
4.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심사 · 추천 및 업적평가
5. 산학협력 가족회사 및 산학협력협의체 · 펠로우 운영지원
6. 취 · 창업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
7. <삭제 2017.05.16.>
8. 각종 산학협력지표 개발 및 연구사업 수행
9. 산학협력교육 및 성과 확산 관련 산하기관 운영 지원
10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제3조의 3(기술이전센터) <신설 2011.08.10.> <개정 2014.03.20.> <삭제 2020.02.28>

제3조의 4(중소기업지원본부) <삭제 2012.12.05.> <개정 2014.03.20.>

제3조의 5(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) <개정 2011.08.10., 2012.01.25., 2014.03.20.> <삭제 2020.02.28>

제3조의 6(창업보육센터) <삭제 2017.05.16.>

제3조의 7(기업지원센터) 기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<신설 2012.01.25.> <개정 2014.03.20., 2015.01.19., 2020.02.28>

1. 산학협력 인적자원개발사업 기획 및 운영
2. 산학연계 맞춤형 기업지원협력사업(All-set 기업역량강화, 재직자 교육훈련, 기술 지도자문, 기술교류회 지원 등) 관련업무
3. 산학협력사업 운영 <신설 2020.02.28>
4. 기타 중소기업 지원 관련업무 <신설 2020.02.28>
5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제3조의 8(창업교육센터) 창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<신설 2014.03.20.>

1. 창업인력양성 및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· 관리
2.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지원
3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제3조의 9(현장실습지원센터)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<신

설 2014.03.20.>

1. 현장실습 및 Capstone Design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
2. 현장실습 및 Capstone Design 교육 수요조사 및 운영 지원
3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제3조의 10(지역혁신원) 지역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<신설 2017.05.16.> <개정 2020.02.28>

1. 산학협력기업, 지역사회혁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·지원
2. <삭제 2020.02.28>
3.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심사·추천 및 업적평가
4. 산학협력 가족회사 및 산학협력협의회 운영·관리
5. 각종 산학협력지표 개발 및 연구사업 수행
6. 산학협력기업 및 지역사회혁신 성과 확산 관련 산하기관 운영 지원
7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제3조의 11(지역상생센터) 지역상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지역사회 및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혁신지원 활성화
2. 지역상생 발전 및 주민자치 활성화
3. 대학과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
4.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기획
5. 지역사회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기획 및 운영
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<본조신설 2020.02.28>

제4조(산학지원팀) 산학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12.01.25., 2017.02.08., 2020.01.23., 2020.05.04>

1. <삭제 2012.01.25.>
2. <삭제 2012.01.25.>
3. <삭제 2012.01.25.>
4. <삭제 2012.01.25.>
5. <삭제 2012.01.25.>
6. <삭제 2012.01.25.>
7. <삭제 2012.01.25.>
8. <삭제 2020.05.04.>
9. 연구비 유치를 위한 대외활동
10.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운영
11.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

12. 정부, 지자체 및 산업체 연구계약의 체결
13. 정부, 지자체 및 산업체 연구비의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
14. 교외 연구비 집행지원서비스 기획 및 운영
15. 외부연구 관련 규정 및 제도에 관한 업무
16. <삭제 2022.06.03.>
17. <삭제 2022.06.03.>
18. <삭제 2022.06.03.>
19. 연구산학전산시스템 관리 및 홈페이지 개발·유지보수
20. 연구업적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
21. <삭제 2020.01.23.>
22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제4조의 2(산학재무팀) 산학재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<신설 2012.05.30.>
<개정 2017.02.08.>

1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2. 산학협력단 출납 및 증빙관리
3. 산학협력단 세무관리(법인세, 원천세, 부가세)
4. <삭제 2017.02.08.>
5. 산학협력단 결산 업무
6. 급여지급 및 원천징수 업무
7. 산학협력단 자금운용 관리
8. <삭제 2017.02.08.>
9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제4조의 3(LINC사업팀) LINC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<신설 2015.01.19.> <개정 2017.05.16., 2020.02.28>

1. LINC+사업단 사업계획 종합 수립,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확정
2. LINC+사업단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통제
3. LINC+사업단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·지원 및 감독
4. LINC+사업단 사업 수행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
5. 산학협력 창업교육사업 활성화 지원 <신설 2018.10.17.>
6. <신설 2018.10.17.> <삭제 2020.02.28>
7. 창의산학교육원, 지역혁신원 및 산하조직의 업무관리 <신설 2018.10.17.>
8. 산학협력목적사업 운영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·관리 및 홈페이지 개발·유지보수 <신설 2018.10.17.>
9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<신설 2018.10.17.>

제4조의 4(산학구매팀) 산학구매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<신설 2017.02.08.>

1. 산학협력단 물품 구매 및 수리
2. 산학협력단 각종 계약
3. 산학협력단 자산관리
4. 산학협력단 재물조사
5. 산학협력단 물품의 검수
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제4조의 5(산학감사팀) 산학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<신설 2018.10.17.>

1. 자체 업무감사 및 외부감사 관련 업무
2. 교외 연구비 자체감사 관련 업무
3. 감사결과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
4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제4조의 6(기술사업화팀) 기술사업화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
2.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3.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운영
4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5. 기술지주회사 설립·운영 기획 <신설 2020.05.04>

<본조신설 2020.02.28>

제5조(업무의 위임과 지원 요청) ① 산학협력단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본 대학교 본부 및 관련 부서에 위임 또는 공동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4.03.20.>

1. 산학협력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인사관리 업무
2. 물품 구매 업무
3.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
4. 급여지급 및 원천징수 업무
5. 평가·감사업무 및 후생·교육 훈련 업무
6. 현장실습, 창업교육 등 산학협력사업 수행에 따른 유기적 관련 업무의 공동운영
7. 기타 본 대학교 부서에 위임 또는 지원 요청을 통해 공동운영이 가능한 업무

② 의료원 소속 교원의 교외연구비 관리 등의 의료원 산학협력 업무는 의료 산학협력 부단장(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장)에게 관리 위임하며, 의료원 연구행정팀 및 의료 기술사업팀에서 실무를 수행토록 한다. <신설 2011.08.10.> <개정 2012.12.05., 2014.03.20., 2015.05.18., 2021.08.03.>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칙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칙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칙 사항에 의한 부서별 업무분장은 2011년 10월 0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칙 이전에 시행된 제3조 제31호와 제5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칙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산학기획팀-728: 2021.08.03.>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칙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산학기획팀-420: 2022.06.03.>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